

올해 5월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오늘 논의한 연대보증 문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를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일선 금융회사 창구에까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특히 정책금융기관부터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CONTENTS

목 차

- | | | |
|----------|-------------------------|-----------|
| 1 |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 06 |
| 2 |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 10 |
| 3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합니다 | 14 |

연대보증 및 재기(再起)지원 제도를 개혁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청년층은 ‘도전’ 보다는 ‘안정’을, ‘창업’ 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 재도전을 위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대출이나 보증을 해줄 때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 관계인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실패하게 될 경우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미흡하고 금융권이 재창업 지원을 기피함에 따라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져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연대보증 등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14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코자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신설하여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인들에게는 채무 감면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층이 열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혁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 대 기**

1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1 현황 :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

● 2011년 12월 말 현재,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총 79만7000명(은행권 51만5000명, 신·기보 28만2000명)

2 개선 방안

①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2012.5)

| 현행 | 개선 |
|------------------------|------------|
| ① 공동대표자 | (폐지) |
| ② 실제경영자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
| ③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 (폐지) |
| ④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등 | (폐지) |

-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 대표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부담

②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2012.5)

-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 창업을 활성화

| 현 행 | 개 선 |
|---------------------------|----------------|
|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①~⑤중 실제경영자* 1인 |
| ② 실제경영자 | |
| ③ 최대주주 | |
| ④ 지분 30%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 |
| ⑤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 |

* 실제경영자는 (i)최대주주, (ii)지분 30%이상 보유자, (iii)배우자등 4촌이내 친족지분 합계 30%이상 보유자, (iv)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실제 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경감

- **현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0②)*에 의거해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는 감면 되지 않음

* 민법(§430)상 보증 채무의 부종성(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 채무도 감면)에 대한 예외를 인정

- 개선 :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
 - 신·기보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진공 설립 근거법)을 개정해 정책금융기관부터 우선 적용 추진(2012년 중 입법 추진)
 - * 일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도 추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법무부 협의 필요사항)

3 시행 방안

- 신규대출 · 보증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2012.5)
- 기존 대출 · 보증에 대하여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
 - 은행, 신·기보 등 기관별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하고, 금감원이 검사 시 이행 여부 중점 점검

4 보완 방안 : 연대보증인 감소에 따른 신·기보 구상권 회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신 리스크 관리 및 부실여신 회수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보완

5 제도 개선 효과 :

- (i)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 ·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

(ii)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약 80만 명 중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은행권 총 51만5000명 중 29만4000명, 신·기보 총 28만2000명 중 14만4000명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56-9756, 9760

2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가. 현황

- 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적이 미흡한 상황

| | 기 보(2005.3~11.12) | 중진공(2010.3~11.12) |
|-----------|-------------------|-------------------|
| 신청업체 수(개) | 16 | 275 |
| 지원업체 수(개) | 3 | 105 |
| 지원금액(억 원) | 5 | 139 |

- ② 이는 신청 대상 기업 제한, 소극적 채무 감면, 과도하게 엄격한 신규자금 지원 심사 등에 기인

기술보증기금

- 신청 대상 : 벤처기업인에 한정(일반 중소기업인 제외)
- 신청 요건 : 대위변제 후 3년이 경과하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내

- 심사 기준: 일반기업 심사 기준을 적용, 이미 실패를 겪은 기업인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최소 지원 가능 등급이 'BB등급 이상'으로 통상적인 보증 지원 가능 등급(B등급 이상)보다 보수적으로 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 대상: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법인 설립을 통해 재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설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제외)

나. 개선 방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2012년 4월 시행)

- 1 위원회 구성: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 인사

* 향후 3년간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 원 수준 조성

- 2 신청 대상: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

- 3 지원 내용: 채무 감면 + 신규자금 지원

① 채무 감면: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 감면

| | 현행 | 개선 |
|----------|----------------------------------------|-------------------------------|
| 채무 감면 대상 | • 상각채권 | • (좌동) •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채권 |
| 채무 감면 비율 | • 일반 금융기관 : 50% • 신·기보 등 공적기관 : 30% | • (좌동) • 신·기보 등 공적기관 : 50% |

② 신규자금 지원 :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 펀드가 공동 지원

| 현행 | 개선 |
|--------------------|--------------------------------------|
| 기보, 중진공 (개별 지원) |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 창업지원펀드 등 공동 지원 |

● 기보 :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벤처재기보증을 대폭 개선

| | 현행 | 개선 |
|-------|-----------------------------------------|------------------------------------|
| 신청 대상 | 벤처기업 | 모든 중소기업 |
| 신청 요건 | • 대위변제 후 3년경과 •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 • 폐지 • 총채무액 30억 원 이하 |
| 심사 기준 | 일반기업 기준 적용 (기보 : 일반기업 기준 BB등급 이상) | 창업기업 수준으로 완화 (기술력,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 창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KTRS-Startup)을 적용하여 매출액 등 외형지표보다는 기술력, 사업성 등 중심으로 평가

● **신보** : 기보와 동일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연간 1000억 원 규모(신기보 합산)로 시범 운용 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

● **중진공** : 기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
- 개인기업 형태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자금 지원 허용(현재는 법인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정)

* 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현황 : (2010)15억 원 → (2011)124억 원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56-9756, 976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3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기능 강화

가. 현황

-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인(법인 연대보증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실적이 저조

* 원금 및 이자 감면, 채무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2010년 4월 ~2011년 12월 중 89명이 신청, 65명의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

- 2 이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요건이 까다롭고, 채무 감면 효과도 미흡하기 때문

●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창출이 없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이 불가능

● 중소기업인 채무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13%로 개인신용회복(23.6%)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신용회복 확정 이후에도 법인 연대보증채무 연체로 인한 기록 (관련인 정보)은 유지되어 금융거래에 애로

⇒ 실패 기업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할 필요

나. 개선방안(12.4월 시행)

-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 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 (현행)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
 -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
 - * 현제도 '군복무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시점부터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도 취업시까지(전역일로부터 최대 2년) 채무상환 유예
- 2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 불량정보를 조기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체정보'와 동시에 '관련인 정보'도 해제하고, '신용회복 지원' 정보 등록

→2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해제

* (현행) 법인 부도시 보증을 선 중소기업인은 해당 법인의 채무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

③ 신·기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30%→50%)

④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 확대(15억 원→30억 원)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30억원 이하 금융채무불이행 법인 수는 총 5만 9209개 업체로 전체 6만3553개 업체 중 약 93%를 차지

② 신·기보 상각채권 매각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가. 현황

① 신·기보의 부실기업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28.2조 원 (상각전 4.8조원, 상각후 23.4조원)

● 관련 채무자는 총 50만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상황

② 신·기보의 경우 상각채권에 대한 추심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약 4.5%에 불과한 반면, 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신·기보의 경우 사망 등 특이사유가 없는 한 지속 추심(일반은행은 채권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

나. 개선방안

신·기보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적극 매각토록 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채무조정 및 조기 신용회복지원

① 매각대상 : 대위변제후 5년 경과 특수채권(약 18.4조원, 관련 채무자 32만명)

* 평균 상각년수 : 신보 3.2년, 기보 3.5년

- 1차 시효완성 시점(대위변제후 5년)에서 구상 실익을 판단
 - (i) 고려자 등 채권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소송 등 시효연장 조치를 중단하여 시효완성(채무면제)
 - (ii) 추가적인 실익이 있는 경우 매각을 통해 채권 회수

② 인수자 : 자산관리공사 등

- 자산관리공사는 상각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 신·기보, 중진공 등의 상각채권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될 경우 다중채무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기능 강화

- ◎ (현행) 원금의 30% 감면 후 장기분할상환(최대 8년), 바뀐드림론(저금리 대출 전환), 생활자금대출(최대 5백만원) 등 지원
- ◎ (개선) 원금감면 비율 확대(30%→50%)

3 매각조건: 회수율을 감안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초과 회수분에 대해서는 신·기보와 자산관리공사간 사후 정산

* 구체적인 매각대상 및 조건 등은 양기관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

4 기대효과: 관련 채무자 총 32만명에게 신용회복의 기회가 추가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

※ 문의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6, 976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청와대 정책소식 과월호

- 제116호 공공기관 이전, 4대강, 지역인재 채용 등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제115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 제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제109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좋은 물건도 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 제108호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
- 제107호 <광역경제권정책 4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제106호 공기업들이 녹색도시·녹색건축으로 '지방시대'를 엮니다
- 제105호 내년에는 국민 세금을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쓰겠습니다(2012년 예산안)
- 제104호 국민 권익보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 제103호 4대강 새물결 준비되었습니다
- 제102호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01호 만5세 어린이들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제100호 한국 경제 성적표(G20 국가와 비교)

⋮

현재까지 발간된 정책소식지를 보고싶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 2009년 2월 23일 창간
퍼낸이 -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엠티이 -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대통령실